

이용자 주의사항

이용객은 안전하고 깨끗한 물놀이를 위하여 다른 이용객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세요.



음용 금지



물놀이용 기저귀 착용



대소변이나
침 뱉는 행위 금지



음식물, 이물질(유리 등)
반입금지



외출용 신발 금지
(물놀이용 신발착용)



애완동물 진입 금지



구토·설사 증상이 있거나,
전염병·피부병이 있을 경우 이용금지

문의기관 연락처

서울, 인천,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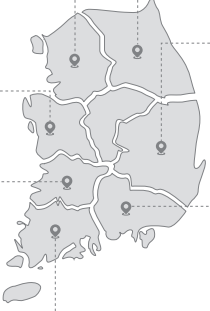
- 한강유역환경청(031-790-2492)
- 서울시청(02-2133-3809)
- 인천시청(032-440-3634)
- 경기도청(031-8008-6933)

강원도

- 원주지방환경청(033-760-6452)
- 강원도청(033-249-2584)

대전, 세종, 충북, 충남

- 금강유역환경청(042-865-0771)
- 대전광역시청(042-270-5672)
- 세종특별자치시청(044-300-5322)
- 충북도청(043-220-4174)
- 충남도청(041-635-2731)



대구, 경북

- 대구지방환경청(053-230-6538)
- 대구시청(053-803-4282)
- 경북도청(054-880-3546)

부산, 울산, 경남

- 낙동강유역환경청(055-211-1671)
- 부산시청(051-888-7828)
- 울산시청(052-229-7545)
- 경남도청(055-211-6734)

전북

- 전북지방환경청(063-238-8929)
- 전북특별자치도청(063-280-3554)

광주, 전남, 제주

- 영산강유역환경청(062-410-5294)
- 광주시청(062-613-4843)
- 전남도청(061-286-7152)
- 제주도청(064-710-4112)

※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www.mcee.go.kr→법령/정책→환경정책→물환경관리)

※ 수경시설 안내 동영상은 유튜브(www.youtube.com) "슬기로운 물놀이형 수경시설 탐구생활" 검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경시설 Q&A

- Q** 용수를 저장·순환하지 않고 계속 흘려보내는 경우도 수경시설에 해당되는지?
- A** 수도물 등 이용 후 즉시 버리는 등 계속하여 새로운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수경시설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Q** 수경시설의 바닥 경사도에 따라 수심이 30cm가 넘는 곳이 있는데 개선이 필요한지?
- A**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되는 구역은 수심을 30cm 이하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 Q** 수질기준 항목에 유리잔류염소 기준이 있는데 꼭 염소소독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 A** 염소소독 이외의 자외선, 오존 등 다른 소독방법도 가능합니다.
- Q** 15일마다 수질분석을 해야하는데 15일째날 비가 올 경우 비가 그친 후 분석해도 되는지?
- A** 비가 그친 후 분석을 의뢰하고 관리카드에 검사주기 초과사유(강우)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 Q** 주말에만 운영하는 시설도 15일마다 분석을 해야하는지?
- A** 15일마다 1회 분석은 의무사항이므로 주말에만 운영하는 경우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 Q** 설치·운영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떠한 조치가 있는지?
- A** 설치·운영자 준수사항은 법적기준이므로 이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처분될 수 있습니다.
- Q** 이용자 주의사항(음용금지, 이물질 반입금지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떠한 조치가 있는지?
- A** 이용자 안전 및 수질관리 위한 권고사항으로 가급적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깨끗하고 즐거운

물놀이형 수경시설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개요

안전한 물놀이 공간 조성과 이용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를 안내드립니다.

정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등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 용수를 저장 및 순환하지 않고 이용 후 즉시 흘려보내는 경우, 수경시설에서 제외

제외

다음 시설들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됩니다.

- 물놀이 금지 표지판을 설치(관리자명, 연락처 포함)하고 울타리 설치하거나, 출입통제 위한 관리인을 둔 경우
-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 중 수영장
- 유원시설업허가·신고한 자가 설치한 물놀이형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조합놀이대



바닥분수



계류시설



벽천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 수경시설을 설치 운영하려고 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하며,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기준과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준수사항(신고 및 변경신고, 수질검사주기,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설치·운영 신고

신고대상

- 다음의 공공 및 민간 운영하는 수경시설

구분	신고대상
공공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수경시설
민간	민간 설치·운영시설 중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관광지 및 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 공동주택,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수경시설

신고시기

- 수경시설 설치·운영 15일 전까지 아래 신고기관에 신고

구분	설치·운영기관	신고기관
공공	국가 및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시·군·구 및 공공기관	시·도지사
민간	공공기관 외 민간	시·도지사

신고방법

-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와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
 - 수경시설 설치명세서 및 도면
 -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위한 조치계획
 - 검사주기가 포함된 수질검사계획서

변경신고

- 다음의 경우 기한 내 변경신고

변경사항	변경신고 기한
시설명칭 또는 대표자	2개월 이내
시설 소재지	30일 이내
시설 유형·종류, 운영기간, 바닥면적 또는 용수종류, 저류조 용량 또는 청소주기, 여과기 설치 여부 또는 소독방법, 수경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폐쇄	변경 전

수질기준

검사항목

검사항목	수질기준
수소이온농도	5.8~8.6
탁도	4NTU 이하
대장균	200(개체수/100mL) 미만
유리잔류염소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0.4~4.0mg/L

검사방법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에게 검사 의뢰

검사주기

- 시설 가동 개시일 기준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검사
※ 강우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주기 초과시 초과사유 및 조치계획을 관리카드에 기재

관리 기준

- ☑ 수경시설 수심을 30cm이하로 유지, 부유물 및 침전물 수시로 점검하고 제거
- ☑ 저류조 주1회 청소 또는 여과기에 1일1회 이상 여과
- ☑ 소독제를 저류조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
※ 먹는물관리법 기준에 맞는 소독제 및 소독시설
- ☑ 물놀이형 수경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 ☑ 수경시설 관리카드 작성 및 인허가 기관에 제출·보관
- ☑ 수질기준 초과시 다음사항을 조치
 - ※ 수경시설 개방 중지
 - 소독 또는 청소·용수 교체
 - 수질 재검사
 - 수질기준 충족시 시설 재개방
 - ※ 수질기준 초과를 확인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기관(시·도 등)에 조치사항 등을 통보

물놀이형 수경시설 안내문

이(00)시설은 00시·군구 (또는 00사무소)에서 물놀이형 수경시설로 신고하여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① 시설명 :
 ② 수질검사관련사항
 가. 검사일자 : 00. 00. 00.
 나. 검사결과
 ※ 기준초과시 조치사항
 ③ 담당자 : 00시·군·구 00과 (또는 00관리소)
 홍길동(000-000-0000)